

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

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위탁기관

- 국토연구원
  - 주 소 :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(반곡동)

2. 위탁업무의 내용

-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, 세무, 회계 등의 교육
-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
- 창업 공간의 지원
-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의 알선
-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위탁기간 :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

4. 재검토기한
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